

제 737 호
1979.10.22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편 집 : 문화공보관 심 계 섭
전 화 75-7834
인 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전 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- 제 1366 호 :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
조례..... 3
제 1367 호 : 서울특별시도시가스공급조례중개정조례..... 4

◎ 고 시

- 제 446 호 : 도시계획사업(도로)실시계획인가..... 5
제 447 호 :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정허가..... 5
제 448 호 :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및건축계획
승인..... 6
제 449 호 : 도시계획시설(운동장, 학교)변경, 지적승인..... 7
제 450 호 : 도시계획시설(시장, 백화점)지적승인..... 7
제 451 호 :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..... 8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2200

㉠ 공 고

- 제 351 호 :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정공고..... 8
- 제 354 호 : 서울특별시구의순위결정공고..... 8
- 제 355 호 : 환지계획변경인가및 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..... 9

㉡ 예 규

- 제 389 호 : 서울특별시직업안정업무처리규정중개정 규정..... 9

㉢ 사 령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상천 인
1979년 10월 22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366 호

서울특별시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의 집 보급을 촉진하고자 태양열 난방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면제구분)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 과세 면제구분은 태양열 난방주택 (건축물중 난방을 요하는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집열판을 지붕위에 설치하고 그 집열판을 통하여 집열한 태양열로 난방을 하는 주택을 말한다) 을 건축한 건축주가 준공후 3월 이내에 보존동기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

면제한다. 다만, 준공후 2년 이내에 태양열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견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.

제 3 조 (사무처리의 위임)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사무는 당해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한다.

제 4 조 (면제신청) ①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과세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.

제 5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기간) 이 조례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정상천
1979년 10월 22일

한다.
제 18 조 제 1 항의 "별표 1 및 별표 1-2"와 제 2 항의 "별표 제 1 및 제 1-2"를 각각 "별표 1"로 하며, 별지의 별표 1-2를 삭제한다

부 칙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367 호

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7 조의 2 의 별표 3, 제 18 조 제 1 항의 별표 1 및 제 22 조 제 2 항의 별표 2 를 각각 별지와 같이

1. (시행일) 이 조례는 197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요금에 대한 경과조치) 1979년 12월에 검침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인상부분의 4분의 1을 감액조정하고, 1980년 1월에 검침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인상부분의 4분의 1을 증액 조정한다.

(별표 1)

1 개월 기본요금		초과사		공요금	
기본량	기본요금	사용량구분		입방메타(M ³)당단가	
10 M ³	1,800 원	기준예정사용량 25 M ³ 까지		180 원	
		기준예정초과사용량		220 원	

(별표 2)

문구		손료		표	
품	명			요금	
가	스	메		타	
				일	당 350 원

(별표 3)

시 설 분 담 금		구		분	
50,000 원		구		경 20 m/m 까지	

교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46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인가

- 1. 건설부 고시 제 109 호 (76.7.19)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.
- 2.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9.10.22.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의 위치 : 강서구공항동 48 의 45-48 의 15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공항입구 가각정리공사
- 2. 사업규모 : 폭 22-65 미터 A=36.4
연장 : 150 미터
- 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
- 5. 착수및준공예정일 : 인가일 - 1979.12.30.

- 6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: 별첨
- 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 : 별첨토지조서상부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47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- 1. 서울시 고시 제 415 호 (1977.11.29) 로 1 차 결정고사되고 서울시 고시 제 217 호 (79.5.19) 로 2 차 결정고사 되었으며 서울시 고시 제 9 호 (78.1.10) 로 1 차 지적 승인되었고 서울시 고시 제 294 호 (79.7.2) 로 2 차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(77.3.16) 의 권관 위임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9.10.22.

서울특별시장

- 1. 사업시행지 : 서울시성동구농동 25.

산 3 의 34 , 산 3 의 35 , 산 3 의 41 ,
구의동 76 의 4
2. 사업종류 및 명칭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3. 면적 및 규모 :
대지면적 32,047.20 기존건축면적
10,375.40 신정부분건축면적578.40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:
학교법인 선과학원 이사장 박보희
5. 사업시행기간 :
자(허가일로부터 지) 1980.12.30
6. 위치및계획명면도 : 별첨 (생략)
7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
건물표지 및 소유권명세 별첨 (생략)

㉞ 서울특별시고시제 448 호

주택 개량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
계획인가및건축계획승인

1.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

구 분	층수	건축면적 (세대당)	전 폐율	용적율	비 고
단독주택	2 층	50 제이상	50 %이하	200 %이하	단독지정지에한함 (준치제외)
공동주택	"	33 "	50 %이하	150 %이하	15,16,24구획 일부 및 2호4호 연립자에 한함
"	3 층		35 %이하	150 %이하	기타연립지정지

2) 건축물의 높이
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의 층수
로 하되 높이제한에 관한사항은
건축법제 41 조 및 동법 시행령제
167 조 규정을 적용한다.
3) 건축물의 모양
건축물의 평면은 구역전체 경관조
성에 적합한 형으로하며 지붕은 박
공 및 모심형으로 하여야 한다.
4) 건축방법

리처분 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
하여 서울시 공고 제 248 호 (79.
7.19) 로 공람한 바 있는 아현
1구역내 1 - 26구획의 26 개구획
에 대하여 관계인 의견서 심사후
일부계획을 변경하고
2. 도시재개발법 제 41 조 및 동법
시행령 제 7 조와 건축법 제 33 조의
2 와 동법 시행령 제 5 조에 의거
나옴과 같이 동구역 관리처분계획
인가 및 건축계획을 승인한다.
3. 고시내용
가. 관리처분계획
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
별통보하며 관계도서는 서울시청
건축국 재개발 2 과와 관할구청
시민홀 및 주택과에 비치
일람함.
나. 건축계획
1) 건축물의 규모

주민자력에 의하여 당시 지정업
체로 하여금 건축함.
5) 건축기간 및 합의기간
건축기간 : 79.10.15-80.10.15.
(단, 합의는 79.11.15 까지)
6) 기타사항은 동구역건축계획승인서
와 건축법 및 관계법령 준용함.

1979.10.23.
서울특별시장

제 737 호 시

보 1979.10.22 11-7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49 호

도시계획시설 (운동장, 학교) 변경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419 호 (79.9.27)로 도시계획시설 (운동장, 학교) 변경결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제

작성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(77.3.16)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제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10.23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운동장, 학교) 변경 지적승인 조서

시 설 명	위 치	면 적			비 고
		기 점	변 경	확 정	
서울운동장	을지로 7가 일대	124,560	감 667.3	123,892.7	증 14.0 감 667.2
한양중, 공고	신당동 251-23 일대	13,942	증 667.3	14,609.3	증 667.2 감 14.9

※ 도면 별첨 (성략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450 호

도시계획시설 (시장, 백화점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426 호 (79.10.2)로 결정 고시된 다음 지역에 대하여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

시 제 41 호 (77.3.16)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2.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과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10.23

서울특별시장

가. 지적 승인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신설	시장 : 백화점	강남구청담동산 67-61	337.10 평	

※ 별첨 : 도면성략

○서울특별시고시제 451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

1. 당시 관내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(77.3.66)의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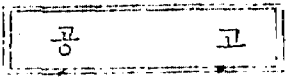
2.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79.10.21
서울특별시장

○ 노 선 조 서

구분	용도	유형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신설	소로	3	6 m	56 m	신수동 292	신수동 288-1	

※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51 호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지정공고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

지정업체 지정요령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품생산 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동요령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79.10
서울특별시장

지정업체주소

지정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명	79년수출목표액	비고
4002	동서섬유	김재균	성동구성수동2가271-11	염색가공	\$ 72,000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54 호

서울특별시구의 순위결정공고

서울특별시 구의 순위를 다음과

같이 결정 공고한다.

1979.10.22
서울특별시장

1. 구의 순위 및 명칭

- 1) 종 로 구
- 2) 중 구
- 3) 용 산 구
- 4) 성 동 구
- 5) 동 대 군 구
- 6) 성 북 구
- 7) 도 봉 구
- 8) 은 평 구
- 9) 서 대 군 구
- 10) 마 노 구
- 11) 강 서 구
- 12) 구 로 구
- 13) 영 동 보 구
- 14) 동 작 구
- 15) 관 약 구
- 16) 강 남 구
- 17) 강 동 구

2. 시행일 : 1979년 11월 1일
 다만, 구로구와 동작구
 사항은 1980년 4월 1일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355 호

환지계획 변경인가 및
 환지계획지변경지정공고

1. 서울특별시공고 제 304 호

(79.9.7)로 환지계획 공람공고한
 영동제2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
 일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, 토지구
 획 정리사업법 제 55조와 행정권한

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
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조의
 규정에 의하여, 환지예정지를 변경
 지정 공고한다.

2. 환지예정지 변경도서는 도시계획
 국 구획정리과와 강남구청 서민봉
 사실에 비치하고 있으며, 토지소유
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
 지한다.

1979.10.2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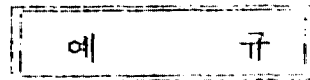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시장

(환지예정지 변경지정 내역)

가. 사업명 : 영동제 2지구 토지구획
 정리사업

나. 변경면적 : 12,163.1 평

다. 변경위치 : 강남구도곡동 139 의 2
 외 72 필



◎서울특별시예규제 389 호

서울특별시직업안정업무
 처리규정중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직업안정 업무처리 규
 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 12 조 제 8항과 제 9항을 다음과

같이 한다.

제 12 조 (자산시설 및 위치)

8 2 종직업안내소 위치는 1급지는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위치하여야 하며 적선지대 또는 위생상 불결한 곳이 아니어야 한다.

9 2 종직업안내소의 건물은 회형과 내부가 깨끗한 건물로서 그의 용도가 사무실 이어야 하며, 단일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. (예 : 1층 10평, 2층 10평 포함 20평 확보 불가)

제 18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항 및 제 3 항을 삭제한다.

제 18 조 (광역취업알선 금지) ① 여자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를 넘어서는 광역취업알선을 할 수 없다. 단, 타도 거주자 일지라도 구인자 본인이 찾아와 영업감찰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구직자를 인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23 조 3 항 제 10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⑩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광역 취업알선을 한 자. 단, 구인자 본인이 인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'79.10.1

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규정) 2 종직업안내소에 관하여,

가. 이 규정에 저촉되는 각종 지시 및 설의척시등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나. 서울특별시 예규 제 382 호 및 제 384 호에 의거 시행한 행정처벌의 효력은 이 규정에 의거 행한 처분으로 본다.

사 령

발령제 387 호

① 1979.10.12

기획조정실
제 2 기획조정관실 조충취
서 기 관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입을 명함. 마포구 시민국장에 포함.

제 1 무임소장관실 유천수
서 기 관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입을 명함. 용산구 시민국장에 포함.

행정조정실 박대수
서 기 관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입을 명함. 성동구 시민국장에 포함.

대 통 령

<p>발령제 398 호 ㉠ 1979.10.18 신 주 윤인선 변경적 3층 상 당에 김함. 1호봉을 함함.</p>	<p>내무국 주무과 근무(시정)를 겸 함. 서울특별시청</p>
--	---